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흠제 의원 외 22명

나. 의안번호 : 제2398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2. 03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2. 06.

2. 제안사유

-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및 모빌리티 도시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를 조성·운영하고 있음.
- 그러나, 자율주행은 편리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의 책무 조향을 신설하고자 함.
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.
- 안전운행 준수 관련 조항 중 기존에 정의했던 법령 외에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추가하여 자율주행의 법·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뒷받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. (안 제3조 신설)
- 나.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항목을 추가 신설함. (안 제9조제7항 신설)
- 다.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를 위해 관련 법령 명확화 (안 제11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5. 02. 11. ~ 2025. 02. 15.
-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- 제출의견 : 수정가결
 - 법령 명칭에 관한 약칭을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 체계상 자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 제안이유와 개정안의 취지에 이견 없이 동의함

1) 미래첨단교통과-2148호(2025.2.14.) ‘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’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관련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자가 안전운행을 준수하도록 상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시장의 책무 신설 관련(안 제3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and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및 제5항²⁾에서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·

2)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(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)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.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.

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

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성과보고서 세부평가 기준³⁾에는 시범운행지구의 안전관리 실적과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등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
■ 위원회 운영 및 안전운행 준수 법령 추가(안 제9조제7항, 안 제11조제1항)

○ 안 제9조제7항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⁴⁾ 운영과 관련해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

3) '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'

3. 성과보고서 작성내용 ○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

2)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

가)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

나) 시설 관리 실적 및 시설 구축계획 이행도

다) 재정적·제도적 지원 실적

라) 안전 관리 실적

마) 갈등 관리 실적

4) 「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(위원회의 설치)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범운행지구 운영·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1.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.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(재정지원, 요금정책 등)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.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.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, 연장, 정지 등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·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운영 방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- 한편, 현행 조례에서는 시범운행 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·시범운행·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

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⁵⁾도 준수하도록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동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과 안전한 운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

5)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